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태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6591

발의연월일: 2022. 7. 21.

발 의 자:정태호·한병도·송갑석

어기구 • 조승래 • 임종성

이성만 • 윤준병 • 설 훈

임호선 · 고민정 · 조정훈

변재일 · 김경만 의원

(14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역과 규모에 따라 소득세·법인세를 감면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와 중소협력기업들의 결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소·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결제를 한 경우그 금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 하는 상생결제지원제도를 시행하고있으나, 이 특례들은 각각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.

그런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중소기업 관련 지원세제 중 가장 일반적이고 넓게 활용되는 제도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장기화로 위축된 중소기업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고, 상생결제지원제도는 중소·중견기업의 열악한 대금결제 환경을 개선하고 현금 유동성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세제 지원들이 계속 유지될 필요

성이 있음.

이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와 상생결제지원제도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1항 및 제 7조의4제1항). 법률 제 호

#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5년 1 2월 31일"로 한다.

제7조의4제1항 본문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5년 12월 31일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	제7조(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
감면)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	감면) ①
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	
기업에 대해서는 <u>2022년 12월</u>	<u>202</u> 5년 <u>12월</u>
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	31일
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	
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	
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	
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(제3호	
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	
한다)을 감면한다. 다만, 내국	
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	
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	
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	
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	
율을 적용한다.	<u>.</u>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7조의4(상생결제 지급금액에	제7조의4(상생결제 지급금액에
대한 세액공제) ① 중소기업	대한 세액공제) ①
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	
기업(이하 제10조를 제외하고	
"중견기업"이라 한다)을 경영하	

는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 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(제7조의2제3 항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 제도(이하 이 조에서 "상생결 제제도"라 한다)를 통하여 지 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 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 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 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 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[사업소득(「소득 세법 시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 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 제122조 의3, 제126조의2,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 서 같다)에 대한 소득세만 해 당한다]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한다. 다만,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

 - <u>20</u> 25년_	12월 31일

 도로 한다.
 ------.

 ②·③ (생 략)
 ②·③ (현행과 같음)